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의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0년 1월 31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(이상복 의원 발의)

1. 제안이유

- 오산시의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고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14조에 따라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관리·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「지방재정법」 제14조에 따라 시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도록 함(안 제2조).
- 나. 기금은 일반회계의 전출금,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, 그 밖의 특별회계·기금의 폐지로 발생하는 재원 등으로 조성하고,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출금으로 기금에 적립하도록 함(안 제3조).
- 다. 기금의 용도를 정함(안 제4조).
 - 1) 시의 세입 중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보다 감소한 경우

- 2)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,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 - 3)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,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
 - 4) 총 사업비 중 시의 재원으로 50억원 이상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
 - 5)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
 - 6)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의 경비로서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
- 라. 기금의 관리·운용을 위하여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, 오산시 재정계획·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도록 함(안 제 6조).
- 마.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정함(안 제7조).
- 바. 기금의 존속기한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로 함(안 제8조).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0년 2월 7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- 우편번호 : 447-701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23, · 팩 스 : 031)375-2875
 - 전자메일 : pk1121@korea.kr

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조례 명 :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의견제출자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| 조례안 내용 | 찬 성 여 부 | | 의 견 | 비 고 |
|--------|---------|----|-----|-----|
| | 찬성 | 반대 | | |
| | | | | |

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오산시의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고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,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설치)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지방재정법」 제 14조에 따라 오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일반회계의 전출금
2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
3. 그 밖의 특별회계, 기금의 폐지로 발생하는 재원 등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출금으로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.

1.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2. 시장이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
2.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

제4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며, 이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1. 시의 세입 중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보다 감소한 경우

2.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,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 3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,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
 4. 총 사업비 중 시의 재원으로 50억원 이상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
 5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
 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의 경비로서 제6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
- ② 한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기금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기금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「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시금고에 예치·관리하되,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하여야 한다.

제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2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
3.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
4.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

③ 위원회의 기능은 「오산시 재정운영 조례」 제7조에 따른 오산시 재정계획·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계공무원)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기금운용관 : 기금업무 담당과장

2. 기금출납원 : 기금업무 담당팀장

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,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